



프랑스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

이정원 (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경제지표의 하나인 구매력(le pouvoir d'achat)의 일반적 개념은 실질처분소득에 관련된 것으로서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임금으로 대표되는 활동소득과 이자나 집세 등의 재산소득 그리고 사회보장지급금 등이 포함될 것이다¹⁾. 그러나 임금 개념과 관련된 구매력은 임금 단위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물가와 임금수준에 관련된다. 이 개념은 프랑스의 고용 및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각종 투쟁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슬로건이기도 하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버는> 노동정책 역시 구매력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취임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러한 노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그 정책들의 내용과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07년 이후로 등장한 구매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구매력의 개념은 프랑스정부 경제통계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see.fr/fr/publications-et-services/default.asp?page=dossiers_web/pouvoir_achat/revenu_pouvoir_dachat_intro.htm

■ 경제 현황 및 전망

고용 및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

2007년 8월 21일자 고용 및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Loi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 : principales mesures sociales, n° 2007-1223), 소위 TEPA법은 제1조에서 “노동수입의 본질적인 증대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제 개편사항과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 계산방식의 개정 그리고 활동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의 시험적 도입 등에 관한 사항들이 구매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조치들로 규정되었다.

- 초과근로시간제 개편

우선, 동 법률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초과 및 보충근로시간에 대해서 수입에 따라 비례적으로 사회보장부담금의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농업, 대인서비스 종사자, 개인에 의한 고용자, 양육보조자, 연 단위 근로자 등 사적 영역의 근로자들 전체이다. 한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는 좁은 의미의 초과근로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의 보충근로시간, 선택근로시간, 초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시간, 추가적 근로시간(temps de travail additionnel) 및 휴일 포기에서 나오는 근로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사회보장부담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감면율은 21.46%로 이는 사회보장부담금의 전체를 면제해 주는 수준에 달한다²⁾.

2) 프랑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주당 4시간을 더 일할 경우, 매달 거의 200유로 정도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Campagne de communication sur les mesures en faveur du pouvoir d'achat”, 2008년 7월,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www.mesurespouvoirachat.gouv.fr) 참조, pp.9

한편, 사용자들은 감면 영역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장부담금의 정액 감면을 받는다. 동 감면 조치는 근로자가 사회보장부담금의 면제를 받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사적 영역에서 실업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국영기업 및 상공업 분야의 공공사업장 및 지역공동체가 다수 참여하는 형식의 경제공동체, 선원, 광부 등 사회보장 특수체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단, 동 감면은 초과근로시간이 나 초과된 것으로 간주된 근로시간 및 선택근로시간에 적용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보충근로시간은 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되는 금액은 20인 초과 기업에서 시간당 0.5유로, 20인 이하의 기업에서 1.5유로이다.

또한 법률은 중소기업에서의 초과근로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근로자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2005년 3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초과된 근로시간 중 첫 4시간은 일반 규정에 따른 25%가 아닌 10%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에 의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첫 8시간에 대한 25% 비율이 똑같이 적용되게 되었다.

- 사회보장부담금 계산방식 개정

기존 사회보장법 L.241-13조에 의해 규율되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부담금 감축 계산방식이 개정되었다. 개정법률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에 의하여 증가되는 임금이 더 이상 감면율을 감소시키지 않게 되었다. 즉 앞으로 초과근로시간에 의하여 증가되는 임금은 감면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 평균 시급에서 고려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동 조치는 그 동안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커졌던 사용자들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덜어서 더 많은 근로시간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 활동연대소득제도의 도입

동 조치는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에 대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RMI(Revenu minimum d'insertion, 기초생활수당) 혹은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편부모수당)의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 조치에 의하면 수령자는 부양가족 수나 경제활동, 직업훈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장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액을 수당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TEPA법은 동 조치를 특정 지역에서 3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활동연대소득제도의 일반화 및 편입정책 개혁에 관한 법률³⁾」 및 그 행정명령⁴⁾은 활동연대소득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체로 넓히는 한편, 시행조치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

2008년 1월 31일 채택된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Loi pour le pouvoir d'achat n° 2008-111)은 2007년도 구매력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이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과 근로자의 기업이익분배권제도 개편, 그리고 특별보조금 지급이 그것이다.

-근로시간 증대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증대를 위한 조치들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35시간제를 위하여 설정된 근로시간 단축일(jours de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연단위 근로일산정개별협약(conventions de forfait en jours)의 휴가일, 휴가적립제⁵⁾(le compte épargne-temps)에 의해 발생한 휴가일 등에 상당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한편, 초과근로시간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증가 대상이 아니라 대체보상휴가의 형태로 주어지는 기업의 경우, 법률은 근로자가 이 휴가를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동등한 수준의 임금인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인상분에는 TEPA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 LOI n° 2008-1249 du 1er décembre 2008 généralisant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et réformant les politiques d'insertion

4) Décret n° 2009-404 du 15 avril 2009 relatif a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5) 노동법전 L.3151-1조

-기업이익분배권 행사 조건 완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기업이익분배협약에 의하여 경영참여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노동법전은 동 권리 발생 후 5년간은 행사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전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그런데 이번 조치에 의하여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순 청구만으로 기업의 수익에 대한 몫을 1만 유로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동 조치는 2008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 조치로서 관련된 액수는 약 120억 유로로 추산되었다⁷⁾.

-특별보조금 지급

위 기업이익분배협약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만 그 체결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위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50인 미만의 기업, 즉 기업이익분배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법률은 별도의 협약 체결의 방법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유로까지의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2008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 조치로서 그 금액조정은 협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 자격, 직급, 근로기간, 연공이나 회사 출근 기간 등의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2008년 8월 20일자 사회민주주의 혁신 및 근로시간 개정에 관한 법률(Loi portant rénovation de la démocratie sociale et réforme du temps de travail, n° 2008-789)이다. 동 법률은 1998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제⁸⁾의 역사를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6) 노동법전 L.3311-1조 이하 참조. 선지급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노동법전 R.3324-22조는 결혼, 해고, 퇴직, 장애사유 발생, 사망, 주택구입이나 조기퇴직 등을 들고 있다.

7) 《Campagne de communication sur les mesures en faveur du pouvoir d'achat》, pp. 10.

8) Loi n° 98-461 du 13 juin 1998 d'orientation et d'incitation relative à la 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Loi n° 2000-37 du 19 janvier 2000 relative à la réduction négociée de la durée du travail.

즉 종래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나, 동 법률에 의하여 연간 추가 가능한 근로시간(contingent annuel d'heures supplémentaires)의 결정에 있어 각 기업단위 협약이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이들 노사협약은 초과근로 관련 조건들과 이에 대한 보상휴가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시간 변경 관련 조건이나 예고기간 등 근로시간의 조정과 관련한 폭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단위 근로시간 산정과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규정들이 단순화되었다.

노동소득을 위한 법률

2008년 12월 3일자 노동소득을 위한 법률(La loi en faveur des revenus du travail, n° 2008-1258)은 구매력 향상을 위한 이전 법률들과 같은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구매력 지지를 위한 이익배당, 참여, 임금 저축 시스템의 개선,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현대화,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조건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기업이익분배 참여에 있어서 그에게 배분된 금액을 세제혜택을 받고 유지할 것인가 즉시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할 전문가 그룹을 새로 조직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에 관하여 기업 내 연간 협상에서 그 조건을 정하고 산별협정 최저임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화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평가 및 전망

이처럼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대략 근로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과 세금을 줄이는 것의 두 가지 수단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들이 실제 구매력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이들 조치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는 시행된 지 1년 만에 그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2007년 10월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 감

면 혜택을 받은 월급제 기업은 전체의 38%였으나 이는 2008년 6월 55%까지 늘어났다. 10인 초과 기업에서 근로자별로 행해진 초과근로시간의 평균 역시 20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그리하여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감면액은 약 33억 유로, 소득세 감면 규모는 2억 2,300백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는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프랑스 정부의 뚜렷한 정책노선이 표명된 이상 그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다수의 조치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최근의 금융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고용수준의 악화는 이러한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더욱 쉽지 않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도 법률에 의한 임시적 조치들이 효력을 다하는 연말이 지나고 나서야 이들 조치가 실질적으로 구매력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LI**

9) 2008년 8월 21일자 고용부 장관 담화문,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참조

10) 정부 보고서, 《Mise en oeuvre de l'article 1 de la loi TEPA - heures supplémentaires》, 1월 29일자 참조. 소득세 감면은 2008년도분(2007년도 소득 기준).